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20 선고 2020가단626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우혜정, 이진안, 윤지원, 이윤선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츠로

담당변호사 김지호, 이찬승, 정현우, 이진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은지, 홍경원, 김영범

변론 종결2023. 3. 16.

판결 선고2023. 4.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 C 사이의 2019. 3.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의,
가. 2019. 3. 19.자 20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중 20,000,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 2019. 11. 25.자 91,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1)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하 'C'라고만 한다) 사이의 2019. 3. 19.자 200,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 중 2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9. 3.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의 2019. 11. 25.자 91,000,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이 사건 2022. 1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2019. 3. 27. 선고 2018나24005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C를 상대로 하여 원고의 청구 인용된 576,762,3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판결 확정일: 2019. 6. 27., 1심 판결(판결일: 2018. 8. 23.):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용]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등기부상 거래가액: 450,000,000원), 2019. 2. 27. D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판결 직전인(1심 판결 이후임) 2019. 3. 20.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인 2019. 11. 14.경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9. 11.

25.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등기부상 거래가액: 435,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9. 11. 15. 같은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C는 선행근저당권(D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를 담보로 하여 2019. 2. 27.경 D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자신의 처인 F을 통하여 2019. 3. 19.경 그 중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이하에서는 위 200,000,000원의 지급행위를 '1차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피고는 그 직후인 2019. 3. 20.경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다시 며칠 후인 2019. 3. 25.경 피고는 18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였다.2) 마. C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잔금으로 E로부터 지급받은 91,335,194원 중 91,000,000원을 2019. 11. 25.경 피고에게 송금하였다(이하에서는 위 91,000,000원의 지급행위를 '2차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1, 2차 금원지급행위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바.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서는 2019. 11. 25.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C는 2017. 2.경부터 2020. 8.경까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는데, 피고는 2017. 2.경부터 2019. 10.경까지 동안 위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9. 11. 15.경 이미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이후 C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E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등으로 재산이 복귀되었다가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이 사건 아파트 전체가 채무자인 C의 일반책임재산에서 이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더 이상 있다고 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았으므로 여전히 위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일반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하여 변제를 받은 행위가 별도의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과 관련한 계약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H의 회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무렵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및 매각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아파트를 재원으로 한 것이므로, 편의상 이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여 C의 무자력 여부를 봄), 그 무렵 C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그 무렵 등기부상 거래가액(435,000,000-450,000,000원)을 초과하는 물품대금 채무(항소심을 통하여 확정된 C의 채무액: 576,762,3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원고에 대하여 지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C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말미암아 C의 총재산이 더욱 감소되어 일반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심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및 이유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무렵 피고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기존 채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설령 C가 피고에 대하여 기존 채무가 있었고 그 변제로써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C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이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된다.

① 피고와 C의 아래와 같은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무렵 C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는 C와 2017년경부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무렵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같은 회사(주식회사 G)에 함께 재직하고 있었다.

●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와 2013년경부터 의류도매업계에서 함께 일하면서 친한 지인 관계였고, 상호간 물품을 거래하면서 계속적 거래관계를 하여 왔다.

● 피고가 스스로 제출한 을가 제4호증4) 을 살펴보면, 피고와 C는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는 상호간에 거의 매달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거의 대등하게 주고받으며 활발한 거래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경부터는 그 거래횟수 및 빈도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C에게 송금한 돈에 비해 C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현저히 적어지는 등5), 피고가 제출한 위 자료만 보더라도 C의 경제적 상황이 2017년경부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무렵까지 그다지 좋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9. 3. 25.자로 피고가 C에게 송금한 합계 18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임을 주장하였을 뿐 그 이전 C에 대한 다른 기존 채권이 있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가, C가 그 처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전날인 2019. 3. 19.경 피고에게 그보다 많은 금액인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자, 위 200,000,000원의 송금액은 기존의 계속적 거래관계상의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200,000,000원을 변제받고 다음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2019. 3. 25. 피고가 새로이 C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피고의 2022. 9. 6.자 준비서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대로라면, 피고로서는 2016년 말경부터 많은 돈을 C에게 빌려주기만 하고 2년 이상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껏 2019. 3. 19. C로부터 20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일주일도 안되어 바로 다시 C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이고, C로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에게 200,000,000원의 거액을 변제한 후 바로 다음날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하여 주었다가 설정 후 며칠 지나 다시 피고로부터 18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송금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일 뿐이다(오히려, C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가 마치 위 180,000,000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지급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미리 금원을 지급받은 후 C에게 직접 위 18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금원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③ 피고는 C로부터 2019. 11. 25. 91,000,000원을 지급받기 열흘 전인 2019. 11. 15. 이 사건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하여 주었다. 피고의 주장대로, 설령 피고가 C에게 2019. 3. 25.

180,000,000원을 다시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 C로부터 별다른 돈을 반환받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터 말소하여 주고 그 이후에 C로부터 대여금의 절반인 91,000,000원 상당만을 변제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6) 피고는 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합계 110,000,000원7)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8)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신영

별지

- 1) 이 사건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선행함.
- 2) F을 통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바로 C에게 송금함.
- 3) 원고는 E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가, 2022. 8. 12.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음.
- 4) 피고와 C간의 금전거래관계를 피고가 정리한 것임
- 5) 2016. 12.부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직전까지 피고는 C에게 합계 472,000,000원 가량을 송금하였으나 C는 2016.경부터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직전까지 합계 94,000,000원 정도만을 피고에게 송금함.
-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7) 원고는 1차 금원지급행위 중 20,000,000원 부분과 2차 금원지급행위 91,000,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합계 111,000,000원이다.
- 8)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금전만이 가능하다.